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5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대학로문화지구내 제1종 권장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시설 보호·육성을 기어하고,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며, 주택이 별도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학로문화지구 안에
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하여 승인된 관리계획에 의하여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
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안 제7조의 3).
- 나.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로 규정
하던 것을 주택이 별도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주
택을 분리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현
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
간 100분의 50을 경감함 (안 제13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구세 감면 적용 배경

○ 먼저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대학로 문화지구 내 제1종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위하여 2006. 2. 6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함에 따라 대학로 문화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이며, 또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에 대한 2005. 5. 20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허가 결정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대상 시설에 대하여 각각 감면하려는 데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2. 대상시설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추이

○ 현재 대학로 문화지구내 제1종 권장시설 감면 대상은 동숭아트센터 소극장을 포함한 36개소로서 그 시설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면 연간 1억 5백만원을 감면 받게 되어 총 5억 2천 5백만원의 세수가 감소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6. 4. 20 현재 관내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광장시장을 포함한 21개소이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은 광장시장외 5개소(동대문시장, 동대문D동상가, 광장골목시장, 통인시장, 종로신진시장)로서 이 조례 시행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경우 연간 5백만원 정도 감면을 받게 되어 총 2천 5백만원의 세수가 감소된다 하겠습니다.

○ 나머지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제명 등을 인용한 부분을 일괄정비 일환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앞으로 감면 대상 시설이 점차 늘어날 경우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세수확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IV.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2. “권장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제23조의 3 제2항의 영업시설 중 당해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환경개선사업중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비 가리개,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신축 또는 증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대상 및 한도, 절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